



韓藥調劑權과 韓藥業士

全北韓藥協會長 · 金 兌 鎭

• 序 論

“盧, 梁, 姜 生員이 靑山白骨을 相爭하니 功半罪半” 이라는 옛날 고을 원님의 판결문이 생각난다. 노, 양, 강씨 성을 가진 세 집안이 깊은 산중에 있는 할아버지 묘소에 성묘를 와서는 하나의 묘를 서로 자기 할아버지라고 멍살을 잡고 다투다가 관청에 고발되었다. 원님이 고심 끝에 내린 해학적인 판결을 후인들은 노, 양, 강생원 을 노란강생이(강아지)로 고쳐 부르며 명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나 들여다 보면 명판결이 아니라 우선 싸움만 말리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백골의 임자가 뚜렷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7년간 있었던 韓藥調劑權 분쟁이 소개한 결정과 너무도 닮았다. 한약조제권은 韓藥業士들의 것이지 韓醫師, 藥師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한약업사들이 힘이 너무 약하여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정부가 고을 원님이 되어 無主空山の 백골같은 한약조제권을 객들에게 나누어 준 격이 되고 말았다. 하나하나 객관적 입장에서 증거를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 本 論

1. 개항기 이전의 한의약 제도

東西의약을 막론하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醫師와 우수한 약을 개발, 생산, 공급, 감독, 조제하는 藥師는 나누어 질 수 밖에 없다. 우리 나라도 이미 百濟 성왕 323년(554년) 부터 韓醫師와 韓藥師가 분리되어 그 맥을 이어왔다.

2. 개항기의 한의약제도

조선조말 官에는 醫員과 注簿라는 이름으로 韓醫師와 韓藥師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韓藥房을 하는 藥業者가 약재만 판매하지 않고 患者의 용태에 따라 醫師처럼 藥材을 조합 교부하는 것이 관습이었다.(한국약업사, 홍현오 지음, 1972년 발행)

서울에는 한의사가 처방을 내면 환자가 그것을 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었다. 기타

각도에서는 醫者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약방에서 진료와 투약을 함께 하였다. (鷄林醫事, 小池正直 지음, 1887년 발행)

일제 강점시 한의약말살정책으로 한의사와 한약사를 醫生, 韓藥種商으로 격하시키면서 西洋醫藥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限地, 限時的제도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초의 약사법(약업취체령)을 만들면서 韓醫師, 韓藥師, 洋藥師의 업무 한계는 명확하게 하였다. (한약종상 시험정북, 행림서원, 1938년 발행, 국립도서관 소장)

한의사(醫生) : 醫業에 관한 일체의 진료행위 및 自診患者에게 藥料調合.

한약사(韓藥種商) : 한약의 도·소매 및 무역, 일반처방 및 한의사 처방의 조제

약사(藥劑師) : 洋藥의 도·소매, 일반의약품 처방 및 의사처방의 조제

藥劑師(藥師)와 韓藥種商(韓藥業士)은 調合行爲에 있어서는 一致하나 藥品에 限하여서는 西洋藥과 韓藥의 差가 있다. 韓藥種商에게 附與한 韓藥取扱에 關한 業務權은 藥劑師(藥師)의 醫藥品(西洋藥)取扱에 關한 業務權과 差異가 없다.

藥劑師(藥師)라 하여도 韓藥調合에 限해서는 學識과 技術이 不足하므로 舊관에 의하여 韓藥을 調合하는 것은 試驗에 及第되는 者에 限하여 韓藥種商이 한다 (大正 三年 衛發 제340호, 1914년)

3 광복후 약사법 제정과 시대적 상황

1953년 12월 18일 制定된 藥事法은 소분과위원회(保健)에서 韓醫師制度가 설치된 이상 韓藥師制度도 설치하자는 안이 결정되려는 순간 保健部 차관 정경모(藥師)가 한방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방에는 醫와 藥을 나눌 수 없으므로 韓醫師가 診療投藥을 해야하기 때문에 韓藥師制度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廢棄하게 되었다. 그러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만여 韓藥業士는 단순히 韓藥 乾材(도매)만 한다는 것이냐고 걱정을 하니 차관은 법을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언질을 주었으나 타협이 안되었다. 그래서 약사법 제26조 3항에 「韓藥種商은 患者의 요구에 응하여, 既存韓醫書에 수록된 처방 및 한의사 처방에 의하여 混合販賣할 수 있다」하는 조문을 작성하였다 즉 「患者의 요구」란 條件을 내세웠고, 「旣成韓醫書處方 및 韓醫師處方」에 국한시켰고, 「混合販賣」란 술어를 사용케 했다 韓藥業士의 貼藥行爲에 대해 「調劑」라는 술어를 쓰게 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藥事法制定經緯, 정경모, 大韓藥師會誌, 2~3호, 1961년 發刊, 한국약업사, 홍현호 저)

韓醫師의 受難의 歷史 폐지 부활 교차 : 光復後 1950년 2월 醫療法 제정안에 韓醫師 배제, 1951년 1월 15일 國會保社委에서 韓醫師를 洋醫師보다 格下시키자는 80명 의원제안,

□ 논 단

당시 保社部長官은 우리 나라에 韓醫師制度를 둔 것은 세계보건기구 가맹국으로서 체면손상 이다는 발언, 4.19혁명후 韓醫師制度 廢止論 대두, 1960년 12월 19일 醫師時報에 大韓醫學協會長 金斗鍾의 「韓醫師制度 禁止論」이라는 논설, 1961년 5월 16일후에도 韓醫師制度 廢止 주장, 1962년 3월 20일 千辛萬苦 끝에 韓醫師는 법적지위를 보장받았다 (大韓韓醫師 40年史 대한한의사회 발행, 韓國藥業史, 약업신문사장 홍현오 저)

日帝 침략의 연장 : 韓藥師인 韓藥種商은 韓藥業士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根本的인 政策의배려는 전혀 없이 限地, 限時的인 상태를 오늘날까지도 답습하고 있다. 그것은 韓醫師制度를 廢止하기 위해서는 韓醫師보다 훨씬 많은 韓藥業士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 자연도태 시키지는 것이다. 1953년 藥事法 제정당시 3만여 韓藥師(韓藥業士)는 오늘날 2,50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最初의 藥學大學설립 : 최초의 西洋藥學교육은 韓藥밖에 모르는 韓藥師(韓藥種商)에게 洋藥의 知識을 보급시키자는 뜻에서 최한조, 백치면, 조항기, 이철희, 유한표, 이병철, 최병식, 최홍모, 피희성, 홍사중, 이희용, 허찬, 탁응구, 최덕모, 피희철, 김정선, 최성필, 박의경, 이병두, 이사홍, 지호영, 최정섭 등 구리개(을지로 입구)의 굶직한 韓藥業士의 유력인사가 대거 참여하여 1914년 藥品取扱 하기강습소, 1919년 朝鮮藥學校, 1930년 京城藥學專門學校, 1945년 서울 藥學大學, 1950년 國立 서울 大學校藥學大學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약업사, 홍현오 저)

最初의 韓醫科大學 설립 : 醫生(韓醫師)과 韓藥種商(한약업사)이 東洋醫學大學설립에 여러모로 계획을 세우는 등 깊이 관여하였다 1949년 대구 남성로에서 韓藥業士 呂元鉉이 東洋醫學專門學院을 설립하고 초대원장이 되었다. 1951년 부산의 李羽龍과 함께 國會서 韓醫師法을 통과시키고 부산에 韓醫學大學을 설립하였다 박호풍, 박성수씨가 1, 2대 학장, 여원현씨가 재단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수복후 서울 안암동으로 이사하여 東洋醫學大學으로 개칭, 1966년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으로 흡수되었다. (凍土의 慈光, 呂元鉉저, 1974년 발행) × 당시 전국의 한약업사들은 1인당 백미 7斗씩을 희사하였다.

4. 韓藥調劑權의 다툼 시작

韓藥調劑權의 주체인 韓藥業士가 도태된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韓方이라면 診療와 投藥을 함께 하려는 韓醫師와 藥이라면 洋藥이든 韓藥이든 모두 調劑하려는 藥師의 야합에 보사당국이 맞장구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미워하는 원수지간인 한의사와 약사가 吳越同舟격으로 하나가 되어 자기들을 길러낸 韓藥業士를 쓰러뜨리고 한약업사의 고유

권한인 韓藥調劑權을 서로 자기들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몇가지만 나열해 본다.

- ① 1970년 전후 맹화섭, 염태환씨 등 한의사들이 처음으로 약사들에게 한의학 강의
- ② 1973년 2월 26일 일부회원의 과격한 발언은 오해에서이다. (한의사회 제10대회장 조준복 발언)
- ③ 1977년 5월 30일 한약업사 시험 폐지운동(약사회, 한의사회)
- ④ 1977년 7월 18일 한약업사회에서 마련한 동양약사법 청원반대(약사회, 한의사회)
- ⑤ 1980년 3월 20일 한약업사 제도 폐지 건의(약사회, 한의사회)
- ⑥ 1980년 11월 26일 한약업사들이 마련한 한약사법 반대(약사회, 한의사회)
- ⑦ 1980년 2월 5일 한약업사 시험 중지 건의(약사회, 한의사회)

(1) 藥師, 韓藥調劑를 위한 韓方강좌 · 藥大教育科程이 아닌 韓醫師초빙 강좌
 약국영세화를 탈피하기 위해 회원들의 요청으로 한방강좌 개최 예상보다 청강자 적어 韓方강좌 실패

(부산) 부산시 약사회는 약국 영세화에 탈피구를 찾으려는 일환책으로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한방강좌를 당초의 계획보다 늦게 개최했다. 회원들의 절대적 요청으로서 이루어지는 이번 한방강좌는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10일까지의 수강자는 17명으로 당초의 예상했던 50명에는 동떨어지므로서 약사회 집행부는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건신보 1969년 2월 17일)

(2) 韓醫師 초청 不應 : 藥師主催韓方講座에 麻浦韓醫師分會시 建議案 채택.

서울시내에서만도 각 區分會別 藥師會등에서 定期的인 韓方講座會를 열고 韓醫師들을 초빙해 왔는데 이같은 건의안이 市支部를 비롯, 中央代의원 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藥師들의 韓方講座會에 韓醫師의 초빙은 전면 비토될 것 같다. (보건신보 1971년 2월 15일)

5. 法的, 學問的으로 본다.

韓醫師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藥事法 附則에 의하여 醫藥分業이 될 때까지 조건부로 「韓醫師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韓藥 및 韓藥調劑를 자신이 직접조제할 수 있다.」

약사는 원래 西洋醫藥제도에 의한 西洋藥의 전문인 일 뿐이다 약사제도가 도입된 일제강점시나 광복후 藥事法제정시에도 韓方의 특성상 韓醫師가 진료 투약을 함께 해야 한다고 했지 藥師가 한약을 취급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

198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제88-10-41호)에 보면 전국 약학대학

□ 논 단

중 한약과 관련된 과목을 배우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고 성균관대학만이 本草學 한 과목을 전공필수로 공부하고 있다.

1994년 1월 7일 개정된 藥事法에 의해 韓藥調劑시험을 실시한 것은 과거 藥師가 한약을 취급한 것이 不法이라는 것을 단정한 것이다.

일반 과학을 바탕으로 한 藥學(洋藥)과 수천년 경험을 토대로한 초과학적인 韓藥學은 本質적으로 학문의 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學者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 結 言

장장 7년을 끌어온 藥調劑權 분쟁은 관계 당국의 우유부단한 처신으로 적당히 우물우물 끝은 맺은듯 하나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筆者는 藥師가 학문이 저혀 다른 한약을 조제 한다는 것은 의약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 아니라 점차 韓藥學을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다고 생각하여 1989년 7월 26일 헌법소원을 하였다. 그후 8월 21일 「주문 ·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재판관 조규광, 이성렬, 이시운 등 3인이 서명날인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의 결정문을 받았으나 1991년 9월 16일 청구기간 도과(시효가 지남)로 각하(심판할 필요가 없다)한다는 결정문(주심 이시운)을 받았다. 청구기간이 지났는가 안지났는가도 모르고 우리나라 법의 최고기관인 憲法裁判所의 제1지정재판부가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주문을 했다는 말인가, 서명날인한 3인의 재판관은 잠시 앞을 못보았다는 것인가, 청구기간이 지난 것을 찾아내는데 2년 2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는 있으나 마나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단 한번 심리도 하지 않는 사건을 각하하면서 필자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인용해서 약사법 전체의 구성으로 보아 한약업사는 약사의 보충적 제도로 되어 있다는 해괴한 문안을 삽입하였다. 요즈음 말하는 로비의 흔적이 있다고 의심 안할 수 없다. 그러나 「藥師 韓藥調劑試驗」으로 인하여 韓藥業士는 藥師의 補充的制度가 아니고 그동안 한약을 조제한 약사는 불법이었음을 정부도 약사들 스스로도 인정하였다.

7년간 국력을 소비하고 한의대 학생들의 집단유급한 책임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다. 韓藥調劑權시비는 한방의 의료인인 韓醫師와 양약의 전문인인 藥師들이 직접 당사자들도 아니면서 날마다 시위, 농성, 삭발을 하고 신문 방송을 독차지하면서 토론 성명 광고하는 등 전국민이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리하여 얻어진 것이 「藥師는 韓藥調劑試驗을 보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다」는 1994년 1월 7일 藥事法 改定이었다.

그러자 즉각 大韓藥師會는 약사 주경호 등 몇명을 앞세워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韓藥調劑試驗을 실시하는 것인가, 大韓韓醫師會는 이선우의 14인을 내세워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수 없는데 왜 한약조제시험을 본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改定된 약사법은 잘못되었다는 憲法訴願을 냄으로써 대리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면 韓藥의 主體라는 韓藥業士는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이 1953년 藥事法 制定당시 어떻게든 韓藥師制度설치를 관철하고 그동안 해왔던 기득권을 인정받았어야 했다. 1970년도 이전 약사들이 한약을 나무뿌리 풀뿌리는 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藥事法에 洋藥과 韓藥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다음으로 1980년 藥師들을 관리약사로 하는 韓藥乾材藥業士(도매상)설치시 적극 반대하고 건재한약업소가 필요한만큼의 韓藥業士를 시험을 통하여 배출했어야 했다 1921년 韓藥業士制度가 설치될 때부터 한약건재는 韓藥業士의 固有權限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筆者가 請求했던 憲法訴願에서도 회원들의 성원은 대단했는데 반하여 집행부와 중진 몇사람의 방해 내지 성토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후 7년간 있었던 분쟁에 있어서도 자기것 다빼앗기면서도 큰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保社當局이나 憲法裁判所도 韓藥의 주인이 사실상 韓藥業士라는 것을 內的으로는 알고 있었기에 공청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韓藥業士들의 의견을 물어왔었다. 韓藥調劑權 싸움이 시작될 때에는 사실상 韓藥業士, 韓醫師, 藥師등 삼파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韓藥業士를 배제시킨 체 韓醫師와 藥師 등 삼파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韓藥業士를 배제시킨 체 韓醫師와 藥師의 싸움만으로 이어졌다. 한나라 집단이 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란 것을 실감하게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그들은 전체를 망쳐 놓을 뿐만 아니라 事後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책임을 轉嫁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살펴 볼 일은 많은 韓醫師나 藥師들이 신설된 韓藥師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韓藥調劑權을 서로 자기들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韓藥師制度를 없애려 하고 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다.

필자는 韓藥調劑權은 韓醫師나 藥師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文件 하나를 소개하면서 필을 놓을까 한다. 憲法裁判所가 大韓韓藥協會에 韓藥業士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후 10일도 채 못되어 藥師들도 韓醫師들도 함께 憲法訴願을 취하하였다.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현재 적당히 마무리한 한약조제권 파동은 너무나 왜곡되었을 뿐 아니라 法の條理 또는 社會常規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시효가 있을 수 없다

□ 논 단

• 소개문건

- 보조참가인 주경호의 주장에 대한 반론서 -

• 주경호의 주장

① 약사가 과거에는 11개 기성한약서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였다.

② 한약의 전문인라는 한약업사를 헌법재판소가 89헌마 163결정문에서 약사의 보충적 직종으로 인정하였다.

③ 그러므로 개정된 약사법은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박탈한 것이다.

• 대한한약협회 반론

주경호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89헌마163은 청구기간도과에 의한 각하이므로 본안 심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기판력과 기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한약업사를 약사의 보충적 직종 운운은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1 약사의 11개 기성한약서 조제에 대하여

(1) 약사가 과거에는 11개 기성한약서에 의하여 조제를 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성한약서(과거에는 기성한의서)는 약사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제26조 제3항으로 한약업사에게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1969. 6. 7 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로서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약업사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사가 기성한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2 한약업사를 약사의 보충적 직종으로 인정하였다는 89헌마163 결정문에 대하여 -

• 89헌마163 소원 요지 및 결정

(1) 우리나라는 한약과 양약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에는 양약이 없고 다만 양약이 의약품화 되어있다. 1953년 제정된 약사법 제2조(의약품정의)에서 제2조④로 의약품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후 ⑤ 韓藥과 ⑥ 新醫藥品이라는 洋藥을 분리하였으나, 1963년 전면 개정시 新醫藥品(양약)은 의약품의 일반적인 정의개념과 동일하다고 해서 삭제함으로써 약사법상 의약품은 洋藥化한 것이다

(2) 서양의약 제도에 의한 양약(현행약사법에서 의약품) 전문인인 약사가 불법으로 한약을 취급함으로써 한약업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3) 결정은 청구기간 도과에 의한 각하이이다.

3. 반론 : 한약업사는 약사의 보충적 직종이 아닙니다.

(1)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기간 도과에 의한 각하를 하면서도 異例的으로 약사법 내용으로 보아 한약업사는 약사의 보충적제도라는 假定的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아버지는 서양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약의 맥을 이어왔을 뿐 아니라 광복이후에는 한의과대학을 설립하여 한의사를 배출하였고, 약학대학을 설립하여 약사들을 양성한 한약업사가 어떻게해서 양약사의 보충적 제도입니까. 약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단 한 번도 보건사회부나 대한약사회도 감히 한약업사가 약사의 보충적 제도라고는 주장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렇게 써 있다고만 말 할 뿐입니다.

당시 대한약사회도 의견서를 통하여 자유경쟁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약사의 한약판매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실수는 이렇습니다.

① 한약업사는 약사법에서 지역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약사는 지역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시행규칙 내용으로 볼 때 한약업사는 약사의 보충적 제도이다

(3) 지역제한은 일제강점시 한의약 말살정책에 의하여 의생(한의사), 하약종상(한약업사)을 지역제한했던 것의 연장입니다.

광복후 한의사제도가 부활되면서 한의사들은 지역제한이 철폐되었고 한약업사는 약사와 한의사들의 반대에 의하여 한약대학을 설립하여 그 맥을 이어주지 못한 채, 그대로 지역제한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4)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法理에도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했는데도 오히려 인용한 헌법재판은 우리 나라 최고의 법률기관이 웃지못할 큰 실수를 남긴 것입니다. 동시규는 1983년 12월 시행한 것으로 양약이건 한약이건 약을 취급하는 곳에는 한약업사를 배출할 수 없다는 말도 아닌 법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한약업사의 배출을 막자는 것입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지소는 양약만을 취급하는 곳이고 의원과 보건지소에는 약사도 없는 곳입니다. 주심은 보건지소에 약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5) 어떻게 본안전 사유로 각하를 하면서 실체판단을 하였단 말입니까. 법률에 조예가 없

□ 논 단

는 일반인들이 알기에도 재판에서 본안전 문제로 각하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적인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법률의 일반원리인데 최고의 법률적 가치 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본안전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면서 마치 약사의 한약취급을 정당한 것처럼 즉,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그 이유를 설거하였는 바 이는 재판의 기본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 판시한 내용은 그 자체 기판력을 비롯한 법률적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6) 위와 같은 헌법재판의 실수로 약사들이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전국민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한약분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3. 약사의 한약조제권 박탈에 대하여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1910년경 서양의약 도입에 의하여 탄생된 양약전문인인 약사는 오늘날까지 한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약사법 제21조(조제)에서 모든 의약품은 약사만이 조제할 수 있다 한약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므로 약사가 조제하는게 당연하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1) 서양의약 도입에 의하여 洋藥師制度가 처음으로 실시한 일제강점시(1914년)에도 약제사(약사)라 하여도 한약조제(韓藥조합에 한해서는 학식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구관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시험에 급제(합격)하는 자에 한하여 韓藥種商(한약업사)이 한다. (대정3년, 위발 제340호)라고 분명하게 밝히었습니다.

(2) 1912년 제정된 약품영업취체령 및 1938년 발행한 한약업사 시험정복이란 책에서도 藥師가 한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한구절도 없으며 당시의 韓藥業士 업무는 일반 한약품의 수요공급행위 즉 「韓藥品の 도·소매 및 무역, 一般處方과 韓醫師處方에 의한 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일제 강점시(1908년) 부활되었던 藥令市는 大邱, 全州, 原州, 公州, 晋州, 淸州, 忠州, 提川, 大田, 開城, 義州에서 열리어 1944년 전쟁으로 폐지될때 까지 우수한 한약재의 무역 도산매 등 한약유통과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한 제도였으나 오직 한약방 경영자인 韓藥業士(당시 韓藥種商)만이 참여했을 뿐 藥師는 단 한사람도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4) 광복후 1952년 4월 1일부터 1963년 10월 8일까지 14회에 걸쳐 실시한 韓藥師 국가고시(검정고시) 응시자격도 韓醫院(한의사)이나 韓藥房(한약업사)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만을 인정하였을 뿐 藥局(약사) 경력은 인정한 바 없습니다 약사와 한약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5) 1953년 약사법 제정 당시의 속기록을 보아도 약사와 한약은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약사제도 설치(안) 문제로 여러날 논란이 있었으나 표결 직전에 당시 보건사회부 차관 정경모씨가 한방의 특수성으로 보아 한방은 진료와 투약을 분리할 수가 없으니 한약사 제도가 무의미하다고 의원들을 설득하여 한약사제도 설치(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고 있거나, 할 수 있어서 한약사제도(안)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6) 약사들이 최초로 한약을 접한 것은 1970년을 전후해서 약국의 영세화에 탈피구를 찾으려고 부산, 서울서대문, 마포의 약사회분회에서 230명을 모아 1개월간 古方이라는 한방강좌를 실시한 것부터입니다.(보건신문 1969, 2. 27. 1971. 1. 7. 1971. 2. 15)

(7) 1986년 보건사회부가 한방의료보험 약품으로 한약을 엑기스, 과립화해서 한의사들이 사용토록 하자, 대한약사회는 1986년 12월 1일 동12월 16일 한방보험약품 지정에 관한 건의문, 결의문을 통하여(한약을 생약이란 이름으로 바꾸고)생약제제는 약사법 정의상 한약으로 볼 수 없다. 한약과 생약제제는 학문적 배경이 다르다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허가 제조된 생약제제는 한약이 아니라는 진실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대한약사회가 스스로 의약품과 한약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했으며 약사는 의약품만을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였습니다.

(8) 1988년 (연구보고 제88-10-41호)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약학계 학과 프로그램 개발연구서는 전국 약학대학 학장들이 작성한 것으로 내용중 <표Ⅲ-12>학교별 전공 기초 과목의 개설 현황 <Ⅲ-13> 학교별 전공 필수과목의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58개 과목중 한약과 직접 관련되는 과목은 本草學하나 뿐이며 이것도 전국 약학대학 중에서 성균관대학에서만 전공필수로 배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사들이 주장하는 한약교육 운운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한약과 약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한약조제권 박탈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주장일 뿐 아니라 약사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한다거나 한약조제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을 밝힙니다.